

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기환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8-475
----------	-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. 10. 16.
발 의 자 : 이기환 의원 외 9명

1. 개정이유

-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는 태권도부(2008. 6. 1.) 창단을 마지막으로 12년 동안 설치종목이 6개 종목으로 한정되어 있음.
- 직장운동경기부의 종목 변화를 통해 종목 간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엘리트 체육발전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설치종목을 6개 종목에서 전국 체전 정식종목으로 변경(안 제2조)

3. 개정조례안 : 붙임1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2

5. 관계법령 발췌서 : 붙임3

6. 현행조례 : 붙임4

7. 예산수반사항 : 붙임5 (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)

8. 입법예고결과 : 의견 없음

9. 기타사항 : 붙임6 (부서 검토의견서)

【붙임 1】

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직장운동경기부에 육상, 탁구, 유도, 씨름, 펜싱, 태권도선수단(이하 “선수단”이라 한다)을 둔다”를 “직장운동경기부의 종목은 전국체전 정식종목으로 한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안산시의회
입 안 자	시의원	이기환 의원 대표발의 (행정 3576)

【불임 2】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설치종목) 안산시청 <u>직장운동경</u> <u>기부에 육상, 탁구, 유도, 씨름, 펜싱,</u> <u>태권도선수단(이하“선수단”이라 한</u> <u>다)을 둔다.</u>	제2조(설치종목) 안산시청 <u>직장운동경</u> <u>기부의 종목은 전국체전 정식종목으</u> <u>로 한다.</u>

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에 대한 수정안

의 안 번 호	8-475
------------	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0년 10월 29일
제 안 자 :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

□ 수정이유

- 현 조례체계에서는 직장운동경기부의 존폐여부가 의회 의결사항이나, 전국체전종목으로 확대 시 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축소될 수 있어 조항을 신설

□ 주요골자

- “ 제1항에 따른 종목의 창단 및 해체 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” 를 신설함. (안 제2조제2항)

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에 대한 수정안

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종목의 창단 및 해체 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정안	수정안
제2조(설치종목) 안산시 청 <u>직장운동경기부에</u> <u>육상, 탁구, 유도, 씨</u> <u>름, 펜싱, 태권도선수</u> <u>단(이하 “선수단” 이</u> <u>라 한다)을 둔다.</u>	제2조(설치종목) 안산시 청 <u>직장운동경기부의</u> <u>종목은 전국체전 정식</u> <u>종목으로 한다.</u>	제2조(설치종목) ① 안산 시청 <u>직장운동경기부의</u> <u>종목은 전국체전 정식</u> <u>종목으로 한다.</u> ② 제1항에 따른 종목 의 창단 및 해체 시 의 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 다.